

도서관 통계의 국제표준화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Library  
Statistics

1970년 11월 13일  
제 16차 유네스코 총회 채택

## 도서관 통계의 국제표준화에 관한 권고

###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Library Statistics

1970년 10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제 1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헌장 제 4조 제 4에 기하여 동 기구가 그의 소관범위 내에 걸쳐 있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국제규정을 위한 기관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고,

동 헌장 제 8조가 회원 각국은 총회에 의하여 결정되는 양식에 따라서 교육, 과학 및 문화활동과 기구에 관한 자국의 법령, 규칙과 통계를 그리고 제 4조 제 4에 규정되어 있는 협약과 권고에 의거한 조치에 관한 정기적인 보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상기하고,

도서관통계는 각종 유형의 영향력에 긴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러므로 도서관 발전계획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각국의 도서관통계의 수집, 전달에 책임 있는 관계당국이 정의, 분류, 공개 등의 문제에 있어 그러한 통계자료의 국제적 비교의 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표준화가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도서관통계의 국제적 표준화에 관한 제안을 금번 회의의 의제 20으로 상정하고,

제 15차 총회에서 이 제안을 각 회원국에 권고의 형식을 취하기로 결정한 바,

1970년 11월 13일 본 권고를 채택한다.

총회는 국제적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은 도서관통계의 정의, 분류, 전시 등에 있어 다음 규정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국내법과 같은 형식의 방법을 채택 하든가 또는 이 권고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과 원칙이 관할지역 안에서 법적 효력이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

총회는 각 회원국이 이 권고를 관계당국과 도서관통계를 수집, 전달을 맡고 있는 관계기관에 주지시킬 것을 권고한다.

## I. 범위의 정의

### 범 위

1. 본 권고에 기술된 통계는 특정국가에 위치하고 있는 제 2항 (가) 이하에 정의되어 있는 도서관이 총망라되어야 한다.

### 정 의

2. 본 권고에 말한 통계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다음의 제 정의가 쓰여져야 한다:

(가) **도서관**: 명칭에 관계없이 인쇄된 서적류와 정기간행물 등의 체계화된 수집 또는 기타 다른 도화 또는 시청각자료의 수집 및 그러한 자료들의 이용을 용이하하게 하고 제공하는 일단의 관리진을 이용자의 정보, 조사, 교육 또는 레크리에이션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로 한다.

(나)(1) **관리단위**: 여하한 독립도서관 또는 동 집단도서관이든 단일책임자는 단일 관리 책임 하에 있게 된다.

(2) **열람실**: 어떠한 도서관이든 그 안에 이용자들을 위한 열람실이 별실에 마련되어 있다. 그것이 독립된 도서관이든 보다 큰 관리단위의 일부분이든 관계 없다. 독립적인 도서관, 중앙도서관 및 도서관지관(고정식과 이동식 도서관차, 선내 도서관, 열차도서관) 등은 그곳에서 직접적으로 이용자에 게 서비스하면 서비스포인트로 간주된다. 도서관차가 정지하는 곳은 서비스, 포인트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 **수집**: 도서관의 모든 자료는 이용자를 위해 도서관에 의하여 마련된다.

(라) **연례추가**: 연간 계속적으로 구매, 기증, 교환 혹은 기타 방법에 의하여 추가된다.

(마) **인쇄된**이란 용어는 축소인쇄를 예외로 하고는 성격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재생산방법이 망라된다.

(바) **정기간행물**: 무한정한 기간에 걸쳐서 정기 혹은 부정기적으로 같은 서명 밑에 일련의 계속적인 간행물, 일련의 각 발행물이 연속성이 있게 번호가 붙여지고 각 발행물에 발행일자가 붙어있다. 연차적으로 또는 빈번하게 발행되지 않는 신문도 이 정의 속에 포함된다.

(사) **서명**: 독립된 전체를 형성하는 인쇄된 내용을 설명하는데 쓰이는 용어, 단행 본 혹은 여러 권의 발행물이든 관계없다

(아) **권**: 한 책에 포함되는 인쇄물 또는 원고의 외형적 단위

(자) **도서관이용자**: 도서관의 봉사를 이용하는 자

(차) **기명대출자**: 도서관 외부에서의 활용을 위해 소장자료를 빌려가기 위해 도서관에 등록하는 자

(카) **경상지출**: 도서관운영에서 발생하는 경비지출, 전체 총액 중 다음 것만은 따로 계상한다.

(1) 인건비: 급여와 임금, 수당 및 기타 관련경비;

(2) 자료 구입비 : 도서관에 추가하는 자료 구입비(인쇄물, 원고 및 시청각자료).

(파) **자본지출** : 신간도서구입 또는 고정자산의 추가로 발생하는 경비, 예를 들어 건물관리, 신축건물 및 부속건물, 비품(최초의 소장도서 및 새로 마련하는 건물 등이 포함됨) 이 총액 중 다음은 계정을 별도로 한다:

(1) 대지 및 건물: 도서관의 신규입도서 또는 건물의 대지, 새 건물 및 증축에 대한 비용;

(2) 기타 자본지출.

(하) **훈련받은 사서**: 사서 또는 참고자료 제공업무에 관한 일반적 교육을 받은 도서관종사자. 사서교육은 공식교육에 의하여 혹은 감독하의 도서관에 있어서의 업무시간의 연장이라는 방법에 의한다.

## II. 도서관의 분류

3. 위 제 2항 (가)에 있는 정의에 의하여 망라되는 각 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 및 세분화된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가) **국립도서관**: 명칭에 관계없이 한 나라에 발간되고 있는 모든 중요도서를 구입 및 보존할 책임이 있는 도서관이며, 법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보존 도서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을 말한다. 이들 도서관은 통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능도 어느 정도 수행한다. 즉 전국적 저서 목록의 작성,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나라에 관한 서적을 포함해서 외국의 문헌의 대표적인 수집과 보존, 국정저서 목록적 자료 센터로서 활동하며, 종합목록을 편집하고, 과거에 소급해서 전국출판물목록을 간행할 기능을 가진다. 국립이라 불리우나 도서관의 기능이 위의 정의에 합치하지 않는 도서관은 국립도서관의 범주에 넣어서는 안된다.

(나) **고등교육기관의 도서관**: 주로 대학 및 다른 고등교육기관에 있는 학생과 교수들에 봉사하는 도서관. 이 도서관들은 일반대중에게도 똑같이 개방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되어져야 한다:

(1) 주요 또는 중앙 대학도서관 또는 개별적으로 위치하고 있지만 한 지휘 밑에 있는 도서관의 집단

(2) 대학기관 또는 학부에 부속되어 있으나 대학중앙도서관 또는 주요도서관에 의하여 관할되거나 지휘하에 있지 않는 도서관;

(3) 대학의 일부가 아닌 고등교육기관에 부속되어 있는 도서관.

(다) **기타 주요 비전문화된 도서관**: 비록 특수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립도서관의 기능은 수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고등교육기관의 도서관도 아니며 국립도서관도 아닌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비전문화 도서관

(라) **학교도서관**: 고등교육 이하의 모든 유형의 학교에 부속되어 있는 도서관. 비록 일반에게도 개방되기는 하지만 주로 학생과 그 학교의 교원에 봉사한다. 동일 학교의 여러 계층의 이용자들을 위해서 수집 소장이 단일 도서관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 도서관은 단일 관리단위 및 하나의 서비스, 포인트로 계산되어야 한다.

(마) **특수도서관**: 협회, 정부기관, 국회, 연구기관(대학은 제외), 학술단체, 직업단체, 박물관, 사업단체, 기업체, 상공회의소 등등 단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 등 혹은 기타 조직단체, 특정분야 또는 특정제목의 수집자료(예: 자연 과학, 사회과학, 농업, 화학, 의학, 경제학, 공학, 법률학, 역사학) 이 종류의 도서관에 대해서는 다음 구분을 행한다:

(1) 참고자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대중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는 도서관;

(2) 소장자료 및 도서관의 서비스가 대부분 이용자의 참고자료의 수요를 위하여 계획되어 있는 도서관.

(바) **공공(일반) 도서관**: 무료 혹은 거의 명목상의 요금으로 지역사회 또는

특정구역의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도서관, 이들 도서관은 일반대중을 상대로 봉사할 수도 있고 또는 아동, 군복무자, 병원 환자, 재소자, 노동자, 피고용자 등과 같이 이용자의 특별한 유형별로 봉사할 수도 있다:

(1) 공공도서관: 전액 또는 경비의 대부분을 공공단체로부터 재정정보조를 받는 도서관(시영도서관 또는 지역도서관);

(2) 사립도서관.

4. 각 도서관은 그 도서관의 주요기능에 따라서 제3항에 기술한 범주의 하나에 속해야 한다.

5. '행정단위'로 간주되는 학교 및 공공도서관은 그 이외에 소장도서관의 규모에 따라서 다음 집단의 하나로 분류되어야 한다. 수집의 규모는 인쇄물과 원고만을 망라해야 한다.

(가) 공공도서관:

(1) 2,000권까지;

(2) 2,001권에서 5,000권까지;

(3) 5,001권에서 10,000권까지;

(4) 10,000권 이상.

(나) 학교도서관:

(1) 2,000권까지;

(2) 2,001권에서 5,000권까지;

(3) 5,000권 이상.

### III. 통계자료의 보고

6. 이 권고에 관련된 통계는 3년을 일기로 정기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입수된 정보자료는 제 2항, 제 5항의 규정에 합치해야 한다. 이 권고에 있는 정의와 분류 사이에 그리고 통상적으로 국가적 수준에서 쓰이는 것과의 오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7. 도서관통계는 달리 결정이 없는 한 다음 유형의 자료가 망라되어야 한다. 기간에 관련된 자료는 문제의 연도를 총망라해야 하며, 그 기간에는 연속하는 2의 조사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가) 도서관의 수:

(1) 관리행정단위 :

(2) 봉사장소 : (고정식, 이동식)

(나) 이용인구:

(1) 제 3항 (바)에 밝힌대로 공공도서관에 의함. 공공도서관에의 수익을 받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총인원수;

(2) 학교도서관 인구: 학교도서관시설을 갖추고 있는 초등 및 중등학교의 교원 및 학생수;

(3) 고등교육기관 내에 있는 도서관에 의한 도서관 인구: 대학도서관과 고등교육수준의 기타 기관 내에 있는 도서관시설의 이용능력에 있는 교수진,

학 생 등의 총수.

(다) 수집: 도서관용 수집자료에 관한 고지는 이용자에게 활용될 수 있는 다음 문 서에 한한다.

- (1) 서가에 있는 도서, 정기간행물 및 전집물;
- (2) 서가에 진열되어 있는 원고 서적류;
- (3) 도서, 정기간행물, 원고의 축소본:
  - ① 마이크로 필름;
  - ② 외형적 단위 수에 의한 기타 축쇄유형.

(라) 추가물: 도서관 수집자료 추가물에 관련된 통계는 다음 자료만을 취급한다.

- (1) 표제별, 권별 도서;
- (2) 목록단위수별 비인쇄물;
- (3) 도서 및 비인쇄물의 축소본:
  - ① 롤에 의한 마이크로 필름;
  - ② 외형 단위수별 기타 축소물.

(마) 발행중의 정기간행물 표제 수: 연.중 도서관에 접수된 표제의 수

(바) 등록대출자의 수: 특정 연간 동안의 등록대출자만을 계산해야 한다. 특수도서관의 경우에 있어서의 대출자의 숫자는 계산해서는 안된다.

(사) 대출한 저작물의 수 및 대출한 자리에 보충한 저작물의 수:

- (1) 대출된 도서, 정기간행물, 비인쇄물 등 권별로 계산한 수
- (2) 원본을 복사한 사본 생산의 수량(권별 단위로 계산한다)

(아) 부처내 도서관: 독립행정 단위간의 대여본만을 계산한다.

- (1) 권별 수량에 의하여 계산한 도서, 정기간행물 및 비인쇄물
- (2) 복사된 권별 수량에 의하여 계산한 생산된 복사본

(자) 국제적 수준에서 대출하는 교환도서관

- (1) 다른 나라에 송출한 항목
  - ① 권별 수량에 의하여 계산한 도서, 정기간행물, 원고
  - ② 권별 수량에 의하여 계산한 복제본

(차) 사진 및 기타

도서관에 의하여 이용자를 위해 만드는 복사물(도서관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로 수수료를 받고 생산하는 것은 제외)

(카) 경상비

- (1) 총액
- (2) 인건비
- (3) 도서구입비

(파) 자본지출

(1) 총액

(2) 건물대지와 건물

(3) 기타

(하) 도서관 고용비

(1) 총고용인원 :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와 동등대우

(2) 직책이 부여된 훈련받은 도서관 직원:

사서학위 소지자

전일제근무

시간제근무, 전일제와 동등대우

(3) 감독자의 지도하에 도서관 내에서 과외시간을 이용하는 형식으로 사서교육을 받은 훈련된 도서관 직원:

전일고용; 시간고용, 전일고용과 동등으로 계산

상기 사항은 1970년 11월 14일에 폐막된, 파리에서 열린 제 1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권고의 정본이다.